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5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준영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변론 종결2021. 7. 6.

판결 선고2021. 9.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 E, F, G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D, C는 연대하여 10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D은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6.부터 이 사건 2020.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개명전이름: H)는 1988. 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I, J, K을 자녀로 두었으나, 2009. 11. 16. 협의이혼하였다.

나. L, 피고 D, F은 피고 C의 자매이고, M는 L의, 피고 E은 피고 D의, 피고 G은 피고 F의 각 배우자이다.

다. 원고는 1989. 1. 1.경부터 'N 해남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6. 3. 31. 이를 폐업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청구 피고들, I, J, K은 공동하여 2015. 5. 24.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 직원 P과 Q으로 하여금 원고를 침대에 엎어 놓고 손을 뒤로 제친 다음에 포승줄로 묶고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등 주거침입 및 체포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C가 함께

운영하던 'N 해남대리점'도 곧 부도가 날 것이고, 교육문제로 광주에서 자녀들을 키우겠으니 주말에는 광주에서 함께 지내자는 말 등으로 가장 이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이혼을 할 의사를 갖고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와 이혼을 한 후 원고의 재산을 모두 편취하였다.

나) 피고 F은 R은행 신안군지점에서 피고 C와 함께 약 10년을 근무하였고, 도청출장소지점 차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 C는 원고와 이혼할 무렵인 2009. 11. 11. 'N 해남대리점'의 사업용 계좌를 피고 D 명의 계좌(S단체(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번호 생략)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 F의 관리 하에 들어가 피고 C, D, F은 2010. 1. 29.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재산 1억 15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C, D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1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원고는 2010. 1. 15. M 명의의 계좌(S단체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생략)를 통하여 피고 D에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위와 같이 계좌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T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임대인 U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설령 원고가 위 3,800만 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 D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청구에 대하여 P, Q이 2015. 5. 24.경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고 원고를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에 가담하거나 P, Q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가장 이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D 명의 계좌에 있던 1억 155만 원은 원고 소유의 재산이

아니며, 피고 C, D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소유의 예금 1억 15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C,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C,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을 한 2015. 12.

30.경에는 원고는 손해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M가 자신의 계좌를 피고 C로 하여금 'N 해남대리점'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며, 원고 주장의 3,000만 원은 위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 피고 D과는 무관하다.

피고 D은 원고와 사이에 3,800만 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원고가 지급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1. 15.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청구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은 2015. 5. 24.경 원고를 침대에 얹어 놓고 손을 뒤로 제친 다음에 포승줄로 묶고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등 주거침입 및 체포하였다는 사실로 2016. 8. 18. 이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2016고정56호), 위 판결은 2016. 8.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Q 등의 주거침입 및 체포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Q 등의 주거침입 및 체포 행위에 관하여 2015. 5. 24. I, J, K, 피고 C를 상대로 해남경찰서에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2015. 12. 29. 피고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2010. 1. 29. 예금 계약이 해지되어 1억 155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위 돈이 원고의 재산이라거나 피고 C, D이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 원고는 2010. 7. 8. 이 법원에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혼은 피고 C가 가장이혼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0드단703호), 이 법원은 2011. 6. 16. '피고 C가 원고에게 가장이혼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속아 이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1. 11. 18. 항소기간 판결을 선고하여(2011르706호) 위 판결은 2011. 12.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C, D, F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위 피고들은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이혼을 이유로 원고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2. 28.경 M 명의 계좌로 N 매매대금 7,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2015. 12. 30. 피고 C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 D, F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D, F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0. 1. 29. 피고 D 명의 계좌에 있던 원고 소유의 예금 1억 원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2020. 2. 12.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0. 1. 28.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 15. M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그 통장의 '받는 사람' 기재 부분에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1. 15. 위 통장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0. 1. 15. 피고 D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단1539호로 피고 D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피고 D은 2016. 10. 26.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1325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고는 항고하였으나 2017. 3. 20. 광주지방법원 2017라17호로 항고기각 및 2017. 6. 8. 대법원 2017마502호로 각 항고기각되어 위 취소결정은 2017. 6.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15. M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000만 원이 피고 D의 이름으로 이체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0. 1. 15. 피고 D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E, F, G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편병호

- 1) 원고가 구하는 심판의 순위에 따라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보다 먼저 판단한다.